

08

2019-8호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일본은 국제무역 질서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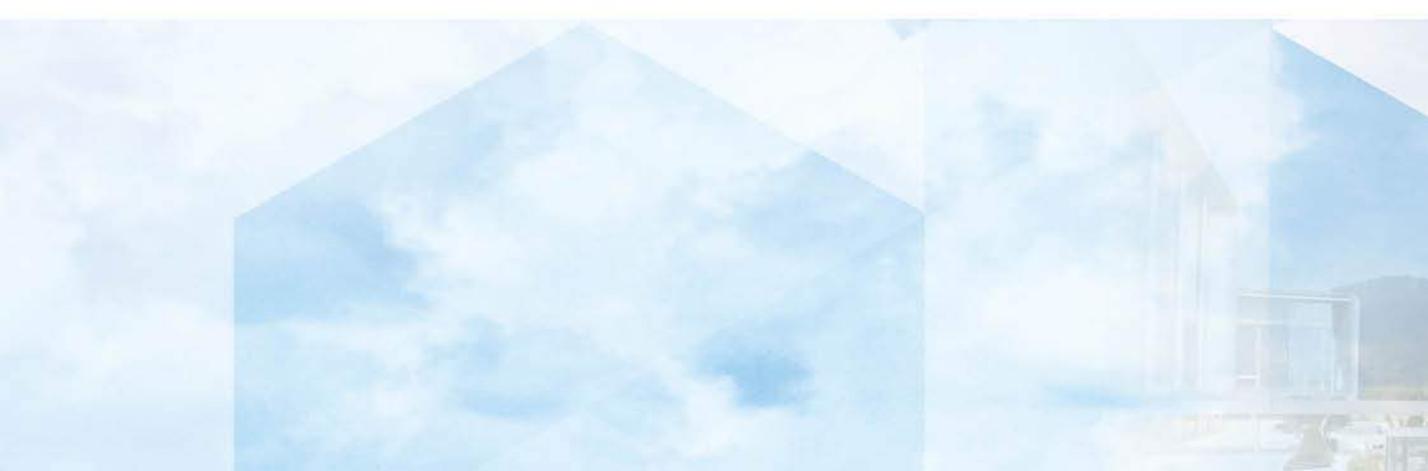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5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7
-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1
-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14
-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먹는물공동시설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20
-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2
-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5
-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27
-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31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34
- 충남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42
- 충남 직업계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의정토론회 48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시의회, 전국 17개 광역의원 공동 기자회견 개최 55
- 부산시의회, 시의회 홍보관 시민친화형 홍보관으로 새단장 57
- 경기도의회, 도민 소통위해 유튜브 채널 'e골림' 개통 58
- 광주시의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경기 관람 응원 60
- 울산시의회, 하절기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61

최근 제·개정 법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6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 항만법 시행령 69
- 건축법 시행령 71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서울특별시「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등 질의 74
- 서울특별시「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관련 질의 78
- 부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시 “청소년”정의 관련 질의 83

도의회 주요동향

- 충남도의회, 중국과 교류협력 위해 나서다 86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39호, 2019. 7. 18., 일부개정]

주요목적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시행 2019. 8. 9.] [대전광역시조례 제5308호, 2019. 8. 9., 제정]

주요목적

대전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의 발굴·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대전광역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공동체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각 대학의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교수
2. 대학,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286호, 2019. 7. 10., 제정]

주요목적

대구광역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 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장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정 노동자 보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정책
2. 감정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3. 감정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방안
4.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민간부문 사업장 확대 방안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모범기준)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 ① 시장은 제5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안내문의 부착 및 통화녹음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안내문의 부착, 통화녹음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지원사업
3. 상담 및 휴게시설 등의 설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업
제9조(포상)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9. 8. 6.] [경기도조례 제6288호, 2019. 8. 6., 제정]

▣ 주요목적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목적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경기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재현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9.] [전라북도조례 제4678호, 2019. 8. 9., 제정]

주요목적

전라북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활용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 4. 드론 안전 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 4. 항만·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 5. 해양 관측·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교육감, 시장·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
3.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부산광역시 동구 먹는물공동시설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19. 8. 13.]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89호, 2019. 8. 13., 제정]

주요목적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건강과 편의 도모

주요내용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②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구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 등을 한다.

② 구청장은 누구나 과다채수, 수질오염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관리 등) ① 구청장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제한 및 금지행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3. 약수터 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4.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애완동물, 취사, 목욕, 음식판매 등)
5.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2.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2.]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381호, 2019. 8. 12., 제정]

주요목적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특정 장소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게시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에 기부자 명단 게재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담당 국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기부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3.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6.]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316호, 2019. 7. 16., 제정]

주요목적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 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 할 수 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시행 2019. 7. 31.]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076호, 2019. 7. 31., 제정]

주요목적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 등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동물 중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해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①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를 하기 전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의 확진이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



·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및 울산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참고 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시행 2019. 8. 7.]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93호, 2019. 8. 7., 제정]

주요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 영위 기여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5. 그 밖에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충남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7. 2.(화), 10:00~14:00/ 당진교육지원청 대강당〉



총 평

(홍기후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돌봄전담사,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지역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 방안 및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충남 초등돌봄교실 정책 추진에 있어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돌봄 정책의 방향전환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짐
 - 현재 초등돌봄전담사들의 희생과 책임감에 기대는 돌봄교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돌봄전담사 배치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과 운영 시간 연장,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대책, 이를 위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 도출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의 깊이와 관점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기능, 사회성, 학습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안 초등돌봄교실 관리 및 운영체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 안정된 돌봄교실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실행지(돌봄전담사)에 대한 고려가 우선 있어야 하며 학생건강과 안전, 정서적 안정과 발달,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과 습, 학습활동의 보완과 확장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교육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과 돌봄 전담사의 임금체계, 일일근무시간 고정화, 돌봄교실 운영의 위탁 금지, 돌봄 전담사 확대배치 등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대안마련을 제시함.

2 지정토론(4인)

① 김정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본부 초등돌봄분과장)

- 학교는 공공성의 강화 측면에서 학생교육의 역할을 바탕으로 돌봄교실을 담당, 학부모가 가장 신뢰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
-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돌봄전담사 근무를 방학 중 비근무 직종으로 분류해 각 학교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증가하며 돌봄교실 운영 갈등 원인이 됨

- 돌봄전담사의 경우 돌봄활동을 준비해야할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대체되고 있고,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걸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체인력도 없어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은 곧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방안이 될 수 있어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② 박동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정책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충청남도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체제 강화를 목표로 오후·저녁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와 방학이나 휴업일 중 돌봄교실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돌봄교실 환경개선과 돌봄전담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자세 중요
-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 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노력, 무엇보다 학교 내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앞으로 학생 중심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③ 배정화 (상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돌봄교실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업무 및 역할을 교육청의 관련 지침, 학교 실정 및 돌봄전담사의 고용형태(무기직, 기간제) 등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모이자 선생님이자, 친구, 영양사, 행정사가 되는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담보로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막중한 임무를 맡은 돌봄전담사는 노동 가치를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주장
- 이에 돌봄전담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교육당국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일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고용할 때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

④ 박기성 (원당초등학교 교감)

- 국가의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줄어들게 될 것임
- 충남 초등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군지자체 돌봄교실 등 학교 안과 밖에서 운영 중이며 학기 중 평일 운영, 토요일돌봄운영, 방학 중 돌봄운영이 이뤄지며 학부모들의 돌봄교실 수요 확대 요구가 높은 실정
- 하지만 일부학교의 경우 돌봄전담사를 배치하지 못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돌봄교실 운영과 지도를 하고 있고, 승진과 관련하여 가산점이 필요한 일부 교사들만 돌봄업무와 토요일 돌봄운영 업무를 희망하고 있어 돌봄교실 업무 담당자 지정에 어려움이 많음
- 더욱 문제는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 학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 현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와 운영을 주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소규모 지역의 경우 돌봄전담사를 활용하고 돌봄업무도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

3 자유토론(질의응답)

- 박기성 교감선생님께서 자치단체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어떤 의미인가?

[질의 : 토론자 김정애]

⇒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될 경우 더욱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답변 : 토론자 박기성]

⇒ 자치단체의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보충해서 답변 한 말씀 드리겠다. 박기성교감선생님의 말씀은 아침과 저녁 돌봄 수요가 일정치 않아 거점학교를 모아 효율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충답변 : 발제자 박성식]

- 돌봄교실 위탁이나 외주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 돌봄교실을 외주화 하는 것은 학교나 교사들이 돌봄교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봄전담사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면 외주화에 대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일제 운영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면 해결될 일이다.

[의견개진 : 발제자 박성식]



4 종합토론

-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전담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교육청과 돌봄 전담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질의 : 학부모]

- 그동안 돌봄전담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돌봄교실 운영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교육청이나 돌봄전담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돌봄교실 활성화 방안과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연구하여 의정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답변: 토론자 박동인]

- 엄마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다. 아이들의 하루상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돌봄교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 현재 돌봄전담사의 경우 기본급 유형(2유형)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자격증 필수직종의 임금유형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개선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질의: 천안 청당초 표정은]

-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도교육청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정책 속에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 토론자 박동인]

- 돌봄교실은 집과 가까운 곳에 있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많을 것이다. 학교에 있든, 자치단체에 있든, 아이들이 편안한 곳에서 돌봄교실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개진: 학부모 김영란]

5 홍기후 좌장 정리발언

- 오늘 의정토론회는 ‘충남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는 배정화 상록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돌봄전담사에 대한 업무환경개선이나 처우개선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함께 현재의 돌봄 체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갖춰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돌봄기관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만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돌봄교실 통합 관리 및 행정전달 체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 특히 학교 내 돌봄교실의 경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장기적으로 아동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방과후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과 제>

1.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을 근거로 운영, 이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양적 증가에 치우친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 위한 계획 수립 필요
3. 특정한 전문자격이 요구되고 있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 제도개선 마련 필요



<결 과>

-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 위한 정부의 통합관리
 - 돌봄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절차가 상이해 학부모 불편
 -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및 행정전달 체계 일원화
-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돌봄사업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추진
 -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근거로 운영
- 학생 중심 돌봄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초등돌봄교실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및 겸용교실 이용, 학생의 정서적·육체적 휴식공간 확보 어려움
 - 돌봄교실 이용자와 교실 수 증가 등 양적 확대 집중, 학생 입장의 돌봄 공간 마련 필요
-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
 - 전일제 전환, 임금체계 유형 1 상향 통일, 휴게시간 및 행정업무 시간 보장 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림.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 내용(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충청도의회(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예산과, 교육혁신과)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7. 8.(월), 15:00~17:00/ 논산문화원 다목적홀〉



I 총 평

(오인환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올바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아 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앞으로 도민참여예산 모델안 구축,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을 제안함
 - 앞으로,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교육확대 및 지역리더 양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경쟁과 참여의 확대 재생으로 서울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상궤도에 올라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예산지원협의회가 보통 2주일에 1회씩 모여 4~6시간 가량 토론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충남의 경우 서울에 비한다면 형식적 회의에 불과함
- 또한, 서울시는 약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서울시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설계하였음
- 이에,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 도민 참여가 가능한 제도 운영, △예산학교 활성화 등 역량 강화, △충청남도만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 또한, 주민 참여의 질과 양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공익 활동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 지정토론(5인)

① 이광원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 구조 한계는 대표성의 문제, 주민들의 전문성 문제, 주민제안 사업의 중복성 문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및 위원의 성비 균형, 청소년,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 도 내 시·군·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의 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구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충청도만의 도민참여예산안 모델안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김상기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는 예산학교부터 시작되는 만큼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 교육 대상자의 구체화, 주민자치회 교육과정에 주민참여예산과 예산교육의 필수 이수 등을 제안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주민의 공모사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없는 상황으로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아울러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전체 충청도민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주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교육의 홍보, 교육, 토론회, 공청회, 연구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③ 김 구(광석면 주민자치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지역민 인식 부족, 미미한 예산범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등 문제가 있음
- 이에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성공적 사례 발굴 홍보가 절실함
- 또한, 참여예산제 운용 예산의 대폭확대가 필요하고, 지역리더 양성과 참여 주민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함



④ 이존관(충청남도 예산담당관)

-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과 접촉 기회가 많은 공동체정책관으로 이관해서 효율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사업 발굴 아이템의 중복성이 높아 반영된 공모사업 예산이 68억에 불과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제고, 교통사고 감소, 범죄예방, 도 공동체 정신 확립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사업 제안이 필요함
- 또한, 도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홈페이지 개선문제도 보완할 것이고, 전년대비 목표액을 상향할 예정이며,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⑤ 박찬해(논산시 참여예산실장)

- 논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시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제도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하여 모바일 활용을 통한 주민제안 활성화와 참여예산 진행상황을 공개할 계획임
- 또한, 예산편성과정의 참여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인터넷, SNS, 지역방송 등 시민 친화적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③ 자유토론(질의응답)

- 노성산 충청유교문화원 건립과 맞물려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이 필요함

[제안 : 노성면 두사리 주민자치위원장 유만석]

⇒ 마을보존방안까지 고려해 단기적 사업진행이 아닌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답변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의정정보 제8호

- 충청남도에서 예산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특히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겠음

[질의 : 연산면 주민자치위원장 오인호]

- ⇒ 현재 결과 알림은 개인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있음. 주민생활밀착형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진행하고, 도는 광역행정인 만큼 특정지역보단 광범위 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앞으로 세밀 하게 통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 충남도 예산담당관 이준관]

- 주민참여예산집행 과정에서 교육,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 규제가 많은 상황임

[질의 : 논산시민 서승필]

- ⇒ 보조금 지원 시 클린카드 제도가 있는 상황으로, 서류작성이 필요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자치분권과와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 논산시 참여예산실장 박찬해]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과 제>

1.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만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마련
 2. 주민참여예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참여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전략 수립
-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교육확대 및 지역리더 양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결 과>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모델안’ 구축 제안
 - 주민의견 반영절차 및 참여방법 등 상세 안내
 -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충청남도에 적합한 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설계 필요
- 참여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동 지원 제안
 - 재정운용과정에 실질적 지식과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비, 연령,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등 인원 구성 필요
 - 인터넷, 우편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학부모, 유관기관, 단체 등 각 계각층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홍보 강화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충남 직업계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7. 25.(목), 14:00~16:00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시청각실>



I 총 평 (오인철 의원)

- 금번 토론회는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학·관 관계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고졸취업자의 임금격차,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업의 고졸 채용 기피,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능력 부족 등 문제를 인식 하고
 -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논의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 앞으로, 학교체제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강희택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청년의 평균 이직률은 36.2%로 초대졸 37.1, 대졸 이상 29%, 고졸이하는 4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 임금 추이는 2018년 전 학력의 월임금은 3,593천원 이었으나 대졸이상은 4,443천원 고졸은 2,880천원으로 차이가 발생으로 취업시장에서 학력을 중시함을 알 수 있음
-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내 선호기업 취업 의향에 대해서는 90.5%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기피 사유는 군대 문제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원자 없음, 직무능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육성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 추진 과제로
 - 교육과정 개선
 -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역량 강화
 - 직업계고 체제 개편
 - 원활한 지역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유관기관과 직업계고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고 MOU체결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지정토론(5인)

① 이혁세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청년과 청년일자리 팀장)

- 현재 충남도는 대학생 및 대졸자 등 일반적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고졸자 취업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교육청, 중앙부처, 유관단체가 예산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는 유지하되, 기관별 역할분담의 명확화가 필요함

② 이무상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능력개발처장)

-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 및 산업 체제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 대부분의 학과개편이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 교직원 역량 강화를 간과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하여 개편 취지에 부합되게 과정 운영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학과 개편 후 최소 3년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체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성’ 과 ‘실효성’ 을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 또한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1학년, 2학년의 교육과정 예산 비중도 높여 주변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학년은 현장실무 집중훈련으로 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③ 선우영구((주)대산이노텍 전무)

- 직업계고 학생들은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취업의지가 강하나 지원을 하지 않거나 군대, 직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근무여건, 급여조건, 근무지역 등 학생들의 눈높이가 시장의 수용 가능성과 차이가 있어 구직인원이 부족한 현실임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지역 내 기업과 학교의 좋은 유대관계 필요



- 학생을 지역인재로 기업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활용

④ 김용정(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관)

- 2017년 현장실습 기간 중에 발생한 학생사고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변화됨에 따라 직업계고 취업률이 급감함
- 임금격차,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업의 고졸 채용 기피 등과 같은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직업계고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부분 고졸 공채 기회 확대, 고졸 채용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도제교육 등 취업지원 특성화고 직업교육지원 정책에 취업관련 유관기관 모두가 관심 갖아야 함을 제안함
- 또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검토 필요함

⑤ 기호엽(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

-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한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2019년 대한민국의 직업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로 인한 능력 있는 직업인 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계열을 타파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시도
 - 현장실습 현장에서 이뤄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필요

- 중등단계에 직업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직업교육 정책 필수
- 시도교육청에 직업교육정책이 이관된 후 직업교육예산이 절반이상 줄었고, 이에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

3 자유토론(질의응답)

- 학교현장에서는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많이 고민 하지만 선생님들의 구조적 측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는 산·학·관이 같이 노력해야함
- 대안으로 교원 선발 시 복수전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교사들이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함
- 현재 복수 전공이 안 되면 상치 교사로 남아 있는 현실 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일정시간 이상 연수를 할 경우 전공교사의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교육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 필요함

[추가 의견 : 금산교육청 교육과정]

- 현재 특성화고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성공업고등학교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음
- 도제를 하면서 홍성의 중견기업에 홍성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성실함이 인정되어 군 제대 이후에 복직하여 정규직 채용이 되고 있음
- 예전에는 홍성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중 당진, 서산 등 타 지역학생들이 많이 입학 하였지만, 홍성공고 학생들이 홍성의 중견기업에 취업함에 따라 2019년에는 홍성지역 학생들이 다수를 이룸
- 단위학교에서 중견기업과 협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에서 지역 학교와 중견기업의 채용 할당제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취업계고 진학을 선호하게 될 것 임
-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학·관이 함께하여 ‘충남 직업계고 인재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 방향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일 때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안착되기 힘든 현실임
- 따라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과 제>

1.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짐
2. 산·학·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결 과>

- 지역 산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선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및 그에 맞는 교원 역량강화 및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
-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고졸 취업 지원
 - 도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직업계고에 대해 중학교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할 수 있는 홍보 필요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일자리노동청년과), 충청남도교육청(미래인재과)
 - 도의회 교육위원회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에산정책담당관실





서울특별시의회

전국 17개 광역의원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전국 확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전국 17개 광역의원 한 뜻 모아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우리민족 자존심 지키자”

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최초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광역의원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조례 제정 의지도 강했다”면서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홍 의원 이어 “14일은 위안부할머니 수요집회 1,400회가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이날 전국 광역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정정보 제8호

홍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형식을 통해 조례안 제정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 극일(克日)로 가는 기회로 삼자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 17개 광역의회 대표발의(예정) 의원 명단

△홍성룡 의원(서울시의회) △손용구 의원(부산시의회) △김동식 의원(대구시의회)
△고준수 의원(인천시의회) △조석호, 신수정 의원(광주시의회) △윤종명 의원(대전시의회)
△윤덕권, 장윤희, 김선미, 김시현 의원(울산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세종시의회)
△권정선 의원(경기도의회) △곽도영, 김혁동 의원(강원도의회) △박형용, 서동학,
허창원 의원(충북도의회) △오인철, 김대영 의원(충남도의회) △문승우, 최영규 의원
(전북도의회) △최명수, 전경선 의원(전남도의회) △황병직 의원(경북도의회) △김진기,
이옥철 의원(경남도의회) △홍명환 의원(제주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시의회 홍보관 ‘볼거리’, ‘즐길거리’ 갖춘 시민친화형 홍보관으로 새단장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 홍보관이 포토존과 체험존을 갖춘 시민친화형 홍보관으로 새단장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한달동안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보관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관을 단순히 소개하는 공간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추고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본회의장을 배경으로 의사봉 체험 및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방문기념 스탬프를 찍고 의회에 바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희망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체험존도 조성하였다. 또한, 홍보관 벽면에는 우리 지역 의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8대 의원 사진을 게시하였다.

박인영 의장은 “시민들이 변화된 홍보관을 통해 소중한 추억도 남기고 시의회를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여겼으면 한다”며 “시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서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8대 의회는 ▲의회소식지 리뉴얼, ▲의정뉴스(‘부산시의회는 지금’) 개편 ▲유튜브 콘텐츠(‘안물안궁 시리즈’) 제작 ▲대형현수막 설치 등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민 소통위해 유튜브 채널 ‘e끌림’ 개통

시대적 요구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제작
홍보대사 김종석·숙행과 함께한 ‘방문기’ 첫 소개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18일 ‘1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새로이 구축·개통했다.

채널명은 도민 및 도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e끌림’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잘 이끌겠다”는 의지와 함께 “도민들의 마음이 가는 (이끌리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내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대표 유튜브 채널 ‘이끌림’의 첫 번째 영상은 지난 6월 2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중심으로 제작한 ‘유튜브 스튜디오 방문기’가 업로드됐다.

유튜브 채널에서 ‘경기도의회 e끌림’을 치면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경기도의회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기획 중이며, 생활밀착형 조례들에 대해 도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의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의회의 소식과 생활밀착형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일상을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게시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 대해 ‘좋아요’나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란다.”고 발 빠른 홍보에 나섰다.

한편,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김종석과 트로트 가수 숙행 씨는



“작지만 잘 갖춰진 경기도의회 유튜브 스튜디오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경기도의회에 놀랐고, 저 또한 홍보대사로서 이를 적극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의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경기 관람 응원

광주시의회(김동찬 의장) 소속의원들과 사무처 임직원들은 지난 12일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경기인 남자 다이빙 경기를 관람했다.

이 날 경기관람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참가선수단과 대회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동찬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동찬 의장은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경기에 함께할 수 있어 무척 감격스럽다”며, “광주시의회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통해 우리 광주가 세계와 함께하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수영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 시설, 안전, 수송, 숙박 등 대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왔으며, 대회의 전국적인 열기를 높이기 위해 ‘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홍보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울산광역시의회

하절기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속적인 민의수렴 및 민원상담으로 대민 의정활동 전개

회기가 없는 하절기에도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공백없는 대민 의정활동이 전개된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미영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의원 일일근무를 실시하여 민의수렴과 민원상담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절기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229-5063)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를 하면 당직의원이 민원과 직접 상담한 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민원 해결에 나선다. 또한,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과 계획 등을 별도 통보하여 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동절기 및 하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 근무를 실시하여 시민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백없는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 제·개정 법령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에산정책임담당관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8. 13.] [법률 제16435호, 2019. 8.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감소, 수익률 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며, 2019년 8월 12일에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추가함(제4조).

나.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은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의정정보 제8호

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및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8월 12일까지에서 2024년 8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함(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중·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1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 처리된 물품의 범위 확대(제19조 각 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 시설 중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을 추가함.

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별표 5 제1호라목·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추가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1호,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등 선형(線型)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하며,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낮추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법령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 완화(제19조의2제3항 및 제79조제3항)

- 1)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함.
-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함.

나. 선형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현행 제21조제2항제4호라목2) 삭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인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내 도로·철도·가스 등 선형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형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도모함.

다. 조례를 통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 유연화(제30조 제2항 신설, 제85조제1항)

1)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등은 법령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하한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결정 권한 확대(제45조제3항)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되, 철도·항만·공항 등 다수의 시·군과 연계된 기반시설 중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서 제외함.

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강화(제51조제2항)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도 옹벽의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함.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상향(제84조제6항제1호)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70퍼센트인 건폐율의 상한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4.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9호, 2019. 7.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시설의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에서 취득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87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협회에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와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항만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은 국내외 항만물동량 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제9조)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 변경 등을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 관련 업무의 위탁(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구축·운영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항만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항만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잔여매립지의 범위 등
(제42조의2 신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잔여매립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제출한 토지·시설 사용 등 계획서에 매수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로 하고,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는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를 준용함.



5.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의 층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조정하며,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4호 신설)

공사감리자는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등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하는 공정에 다다른 경우에도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감리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함.

나.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제34조제1항 본문)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해야 함.

다.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제46조제2항제8호 신설)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라.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1항제6호)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

마.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외벽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 재료로 하도록 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등 관련)

[의견 19-0211, 2019. 6. 27.,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4. 30. 회신 15-0168 해석례 참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같은 호 라목에서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각각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 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는 주체(제2항)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주체(제3항)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복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사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처리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치사무로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사무를 일의적으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위 사무를 위임을 받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참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3. 15. 의견제시 19-0093, 법제처 2019. 6. 5. 의견제시 19-0176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위 사무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회가 발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발의 및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19-0184, 2019. 6. 27.,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4. 30. 회신 15-0168 해석례 참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같은 호 라목에서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각각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는 주체(제2항)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주체(제3항)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복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사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처리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치사무로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사무를 일의적으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위 사무를 위임을 받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참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9. 3. 15. 의견제시 19-0093, 법제처 2019. 6. 5. 의견제시 19-0176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위 사무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청소년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등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려는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등 관련)

[의견 19-0196, 2019. 7. 4., 부산광역시]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5호다목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려는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부산광역시조례”라 함) 제2조제5호다목에서는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조례에서 청소년을 정의하는 경우에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법령 규정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9. 27. 의견제시 17-0253, 2016. 3. 8. 의견제시 16-0044 등 참조).

살피건대, 부산광역시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례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도 아니므로, 부산광역시조례에서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충남도의회 중국 랴오닝성 등 동북 3성과 우호협력 강화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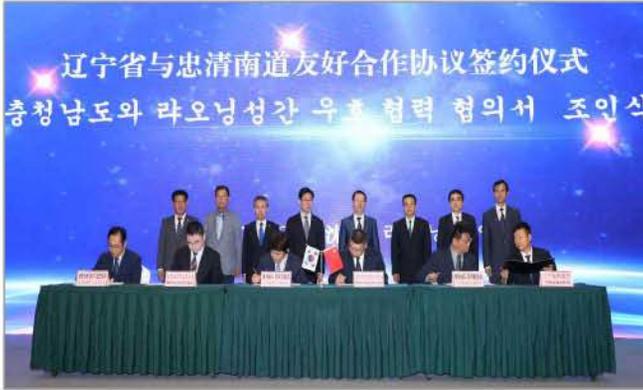
- 충청남도지사, 도의회 의원, 기업인 등 방문단 90여명 자매결연 등 추진 -



◆ 사진설명 : 2019. 8. 21. 충청남도외 중국 지린성간 자매결연 체결

충남도의회는 홍재표 부의장과 오인철 교육위원장, 김복만 예산결산위원장 등 도의회 대표단이 8월20일부터 25일까지 충청남도지사와 기업인 등 중국방문단에 합류하여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3성과 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도의회 자매결연단체인 연변조선자치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승조 도지사와 도의원, 도내 경제인 대표 및 기업인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국기업의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 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우호교류 지역 간의 정례 교류를 통해 중국 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을 지속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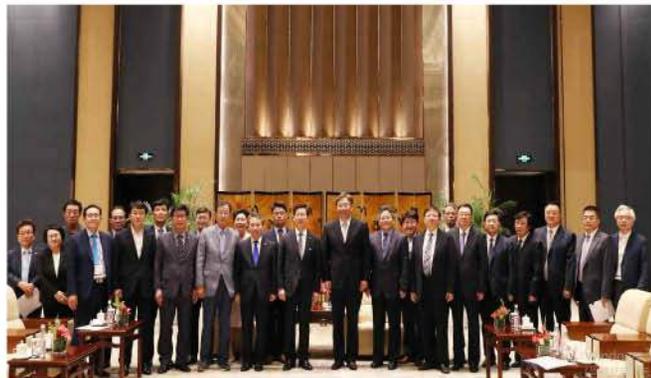
◆ 사진설명 : 2019.8.20. 충청남도와 중국 랴오닝성간 우호협력 조인식 체결
 기업인 100여명 등 약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양 도·성 간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고 양 자치단체 실무차원의 MOU를 잇따라 체결하며 양 도·성 간 교류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20일 도의회 대표단은 랴오닝성이 마련한 ‘충남-랴오닝성 간 우호 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 방문단 90여명과

탕이진 랴오닝성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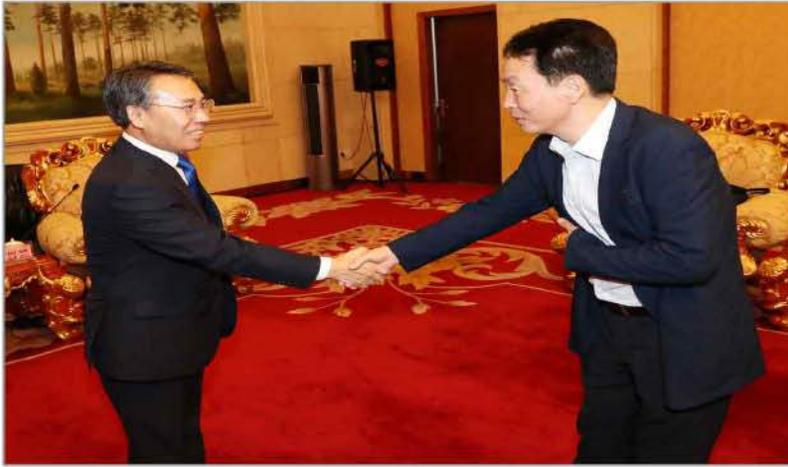
홍재표 부의장은 우호교류의 밤 행사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충남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지가 다수 분포한 곳”이라고 충남을 홍보하며, “랴오닝성과의 경제협력을 비롯해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면서 양 자치단체 의회차원의 교류협력의 중요성도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대표단은 21일은 지린성 성장당서기 접견 및 기업인 간담회, 22일 헤이룽장성장 등 고위관료 접견에 이어 23일 연변 조선자치주 인대상무



◆ 사진설명 : 2019.8.22. 헤이룽장성장 등 고위층 접견 및 교류

위원회 부주임 접견 등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등에도 참석하여 자치단체 간 우의와 협력을 돈독히 했다.



◆ 사진설명 : 홍재표 부의장과 연변 조선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 김상진 부주임 접견



◆ 사진설명 : 연변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 임직원 환담후 기념촬영

특히, 마지막 날 충청남도 의회와 자매결연단체인 연변조선자치주 방문에 서는 조선족은 한민족의 뿌리를 같이하는 동포로서 보다 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교류와 협력을 같이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